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3. 9.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2월 2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2월 24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70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0년 3월 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가. 제정이유

- 우리 구 재정운영과 관련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3개 조례를 통합 규정하고, 그 동안 규칙으로 운영되었던 예산편성사항을 조례로 규정함과 동시에 기금관련사항을 신설하는 등 재정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 또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가. 예산편성 기본방향(안 제4조)

- (1) 예산의 정책기능 적극 수행
- (2) 구민편익에 중점을 둔 재원 배분
- (3) 지역간 균형개발 적극 추진
- (4) 재정운용의 경영마인드 확대

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 제9조)

- (1) 기능 : 재정계획수립 등 재정운영방향 및 민간유치사업 주요시책 등 심의
- (2)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
 - (가) 위 원 장 : 부구청장
 - (나) 부위원장 : 행정관리국장
 - (다) 위 원
 - 영등포구 4급 이상 관제 공무원
 -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 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 영등포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로 함.
 - 위원을 위원회 회의 개최시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다. 기금 설치의 기본원칙(안 제17조)

-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 설치

라. 기금의 관리·운영(안 제8조)

-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 가능

마.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횟수·공개대상 규정(안 제25조 내지 2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송성만)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각기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현황의공개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하나로 통합 제정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장에는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제2장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편성지침 및 내용·절차사항이며, 제3장은 구재정계획수립 및 중점 투자방향, 민간유치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규정과 위원회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5인 이내 위원은 구의원, 전문가, 지역대표 등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제4장은 기금 운용의 총괄규정, 제5장은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상·하반기의 공개대상내역을 명시하고 공개방법과 주민열람사항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향상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 의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14
----------	-----

제출년월일 : 2000. 2. 2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 우리 구 재정 운영과 관련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 3개 조례를 통합 규정하고,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되었던 예산편성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과 동시에 기금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재정 운영의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 또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예산편성 기본방향(안 제4조)

- (1) 예산의 정책기능 적극 수행
- (2) 국민편익에 중점을 둔 재원 배분
- (3) 지역간 균형개발 적극 추진
- (4) 재정운영의 경영마인드 확대

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 9조)

- (1) 기능 : 재정계획 수립 등 재정운영방향 및 민간유치사업 주요 시책 등 심의
- (2)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
 - (가) 위 원 장 : 부구청장
 - (나) 부위원장 : 행정관리국장
 - (다) 위 원
 - 영등포구 4급 이상 관계 공무원
 -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 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 영등포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함.
 - 위원을 위원회 회의 개최시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다. 기금설치의 기본원칙(안 제17조)

-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 설치

라. 기금의 관리·운영(안 제18조)

-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 가능

마.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횟수·공개대상 규정(안 제25조 내지 2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33조
-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제30조, 제110조, 제1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56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
-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나. 예산조치사항 : 해당 없음(기 편성)

다. 조례(안) : 따로 붙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예산편성

제4조(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예산의 정책기능 적극 수행
2. 국민편익에 중점을 둔 자원 배분
3. 지역간 균형발전 적극 추진
4. 재정운영의 효율화 추진

제5조(예산편성지침) ①구청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하는 익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매 전년도 8월 10일까지 예산요구기관(국장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세부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세부 예산편성지침 시달시 예산요구기관에 익년도 자원 배분 기준과 자원배분 예정액을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요구 및 편성) 예산요구기관의 장은 매 전년도 9월 10일까지 소관별 세입세출 예산요구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편성기관(행정관리국장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별 우선순위 및 사업규모
2. 사업계획서
 - 가. 기본계획서
 - 나. 소요자금 및 연도별 자원조달계획
 - 다. 사업의 효과 분석
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4 제5호 내지 제12호에서 정하는 서류

제7조(예산안의 제출 등) ①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액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예산안의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8조(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규정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9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계획 수립, 예산편성, 민간투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채 등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재원배분방법 및 증점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포함하여 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 개최시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임명되는 4급 이상 관계공무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안전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성명
- 3. 심의사항
- 4. 심의결과
-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기금운용

제17조(기금설치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당해 기금에 대하여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이하“구 금고라 한다”)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금고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9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0조(회계관직 지정)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총괄기금관리관 : 행정관리국장
 2. 기금운용관 : 당해기금 담당국장
 3. 분임기금운용관 : 당해기금 담당과장
 4. 기금출납원 : 당해기금 담당주사
 ②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③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기본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절차에 관한 시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의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기금조성계획·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둔다.
 ③자금기본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 항목·세부 항목으로 구분한다.
 ④자금운용계획중 수입·지출계획은 세입·세출예산과 같이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23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구청장은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운용심의회) 구청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1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2. 제23조제1항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장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제25조(주민공개 횟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상황 (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주민공개대상)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2.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연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 당해연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연도 공유재산 등의 취득·처분계획
 7. 당해연도 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계획
 8. 당해연도 공기업 운영계획
 9.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4.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 상황

-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 6. 전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 7. 전년도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 8. 전년도 공기업 운영 상황
- 9.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 ③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27조(공개방법) ①재정운영상황은 구보 등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는 사항과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서,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등은 구정종합자료실 및 재정운영상황공개와 관련된 부서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8조(주민공개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
- 2.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 등의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 3.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29조(사무의 인수인계로 인한 공개) 구청장의 권위·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임 구청장은 제27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3. 9.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2월 26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2월 28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70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0년 3월 4일 상정 의결)